



라이나손보

A Chubb Company
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대표번호+82 2 2127 2400
고객센터1566 5800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무배당 New 실속안심보험Ⅱ(갱신형)2404 2형(유병자형) 상품요약서

1. 문답식 상품해설

Q. 보장 중에 갱신형 약관은 무엇이고 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은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매5년마다 갱신할 때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최대보장기간	갱신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80세	최초계약	5년만기	5년납
	갱신계약	5년만기	5년납
		4년만기	4년납
		3년만기	3년납
		2년만기	2년납
		1년만기	1년납

Q. 이 상품의 보장 중에 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50% 감액지급하는 보장과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장 중 최초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면책기간)이 있는 보장과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장명		최초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지급
중등도이상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중등도이상 치매진단보험금	1년	-
중증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중증치매진단보험금	1년	-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매월 중증치매진단보험금	1년	-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가입연령

구분	최대 보장 기간	갱신 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 기간	납입 주기
[기본계약] 상해사망보장(갱신형) [선택특약]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80세	5년	최초 계약	5년	20세~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갱신 계약	5년	25세~75세		
				1~4년	(80-보험기간)세		
[선택특약] 중등도치매이상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선택특약] 중증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선택특약]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85세	5년	최초 계약	5년	40세~70세		
			갱신 계약	5년	45세~80세		
				1~4년	(85-보험기간)세		
	90세	5년	최초 계약	5년	40세~70세		
			갱신 계약	5년	45세~85세		
				1~4년	(90-보험기간)세		

② 피보험자의 범위

가. 2종(유병자형)의 피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1) 고혈압진단자
- 2) 당뇨병진단자

나. “고혈압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수축기혈압(최대혈압, SBP)의 수치가 140mmHg 이상인 자
- 2)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이완기혈압(확장기혈압 또는 최저혈압, DBP)의 수치가 90mmHg 이상인 자
- 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다. “당뇨병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공복혈당의 수치가 126mg/dL 이상인 자
-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자

③ 기타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적용이율 : 2.0%(연복리)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중 ① 가입연령 항목의 표 참조

③ 갱신에 대한 사항

가. 대상 : 1종(갱신형)의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

가.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매 5년마다 최대보장기간 내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내용(나이 증가로 인한 변동내용, 보장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동내용, 경험손해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회사는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갱신할 때 보험료 예시 등을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안내합니다.
 -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순수보장성 상품으로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상해사망 보장(갱신형)	상해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중등도이상치매보장 (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중등도이상 치매진단보험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함 ※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기초로 함	보험가입금액
중증치매보장 (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중증 치매진단보험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단, 상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중증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함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전문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기초로 함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매월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 ※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중증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함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전문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기초로 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3년간 확정 지급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아래에 해당하는 보장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중등도이상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 중증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 매월주는 중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용이율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보장위험(남/여, 상해1급, 40세)	남자	여자
상해사망	0.000172	0.000081
고혈압 및 당뇨병진단자 질병사망	0.001917	0.001458
고혈압 및 당뇨병진단자 중등도이상 치매보장	0.000009	0.000034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상품명	보험가격지수(%)		가입조건
	남자	여자	
(무) New 실속안심보험Ⅱ(갱신행)2404 2형(유병자형)	121.4%	135.8%	40세, 상해1급, 5년만기, 전기납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5년만기, 전기납, 월납 37,990원
- 기본계약 : 상해사망보장(갱신형) 1억원
- 선택특약 :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억원
중등도이상 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000만원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000만원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00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해약환급률(%)
1년	455,880	215	0.05
2년	911,760	239	0.03
3년	1,367,640	233	0.02
4년	1,823,520	160	0.01
5년	2,279,400	0	0.00

(3)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